

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이용주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2. 2. 11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450호로 2022년 1월 24일 이용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규정 삭제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조, 제21조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관련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12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22. 1. 20. ~ 1. 25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

##### ○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주민의 조례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, 제6장(제21조) 주민 조례 청구 관련 연서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.

위 내용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위임에 따라 제234회 2021년 제2차 정례회에서 영등포구의회 소관으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.

-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12조제1항 등은 “비용추계”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“수반하는” 것에서 “필요한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.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66조의3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<u>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</u>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78조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<u>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</u>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

○ 검토결과,

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·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(2022.1.13. 시행)

현 행 법	개 정 법
<p><b>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</b>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19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9조(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)</b>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·청구대상·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</p>

##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(2022.1.13. 시행)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자)**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“청

구권자”라 한다)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“지방의회”라 한다)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**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을 부과·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4.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**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**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

1.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·도: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
2.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: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
3.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
4.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
5.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
6. 인구 5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

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